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36
----------	-------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김은희 · 송석준 · 황보승희
김희곤 · 권명호 · 백종현
김미애 · 지성호 · 윤한홍
박 진 · 윤주경 · 이양수
박성중 · 김근태 · 조정훈
임병헌 · 노용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톱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톱킹범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응급조치기간과 잠정조치기간이 짧고, 스톱킹행위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6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톱킹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잠정조치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톱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기간 및 잠정조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 조치를 승인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생략)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u>1개월</u> 을 초과할 수 없다. <u><신설></u>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3개월</u> -----. ⑥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u>3개월</u> ,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 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6개월</u> ----- ----- -----. ----- ----- ----- ----- ----- -----잠정조치를

<u>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u>	<u>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u>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 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 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 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 위자의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